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보도일시	2012. 4. 4(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2. 4. 4(수) 14:00	담당부서	국고국 계약제도과
담당과장	계약제도과장 김재신 (2150-5210)	담당자	권오영 사무관 (2150-5221)

제목: 공공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완화 등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 ◆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PQ심사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추가 허용, 예정가격 산정시 최근 표준품셈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함

□ 이번 계약예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PQ 재심사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추가 허용

- PQ심사* 통과 후 낙찰자 결정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 결격사유로 탈퇴시 잔존 구성원만으로 재심사
 - 잔존 구성원만으로 PQ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비용 손실 발생 및 유찰에 따른 사업지연 우려
- *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자격 부여
- 일부 구성원이 결격사유로 탈퇴할 경우 PQ 재심사를 위해 신규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
 - * 계약이행 중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결격사유로 탈퇴하더라도 신규 구성원 추가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사분담금 미납시 탈퇴

-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공사분담금을 미납할 경우 정상적인 시공을 위해 다른 구성원이 대납 불가피
 - 공사분담금 미납은 자기의 출자·분담비율에 따른 시공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규정이 부재

- 공사분담금을 미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예*하며, 일정수준 이상 미납할 경우 탈퇴 조치

* 공동수급체의 공동계좌에 보관하며 분담금 완납시 지급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시 입찰경쟁성 고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시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업체 수가 부족한 경우 입찰의 경쟁성을 저해할 우려

* 종합공사 업체가 주계약자로서 공사를 종합적으로 관리·계획 및 조정하고, 종합 또는 전문공사 업체가 부계약자로서 시공에 참여

-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입찰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토록 의무화

라. 예정가격 산정시 최신 표준품셈 사용 의무화

-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특정 노무량·자재량 등의 경우 최신 표준품셈 대신 물량이 적게 산정된 과거의 표준품셈*을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

- 예정가격을 낮춤으로써 입찰업체의 공사비 관련 민원을 야기하고 공사비 산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 공사이행에 소요되는 평균적인 노무량·자재량 등을 계산한 것으로 당해 물량에 시중가격(임금·자재가격 등)을 곱하여 예정가격 산정

- 예정가격 산정시 최신 표준품셈 사용을 의무화

마. 입찰취소시 설계보상비 기준 마련

- '11.12월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12.4월 시행)하여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도 설계비를 보상*토록 함에 따라 보상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 필요

- 현재는 업체의 설계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보상

* 기존에는 입찰취소시 설계비를 보상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 그 손해를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견해에 따라 개정

- 설계평가 후 입찰이 취소된 경우 현행 보상기준을 준용하여 보상하며, 설계평가 전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비 균분 지급

*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사예산의 2%를 설계비 보상예산으로 확보

□ 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 공동수급체의 PQ심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설계비 등 입찰비용 손실을 방지하고,
-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다른 구성원의 손실·부담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공동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 자의적인 예정가격 산정에 따른 공사비 삭감 관행을 해소하여 업체의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첨 부> 계약예규 개정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계약예규 개정내용

1

PQ 재심사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추가 허용

☐ 현행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통과 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구성원 추가 없이 잔존 구성원만으로 다시 PQ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확인되어야 입찰참여 가능
- * PQ심사 이후 저가심사(최저가) 및 설계심사(턴키) 등으로 인해 낙찰자 결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되어 그 기간 중 부도 등으로 인한 결격사유 발생 가능성

☐ 문제점

- 잔존 구성원만으로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는 설계비용 등의 손실발생
- * PQ심사 통과를 위해 필요한 시공실적이 부족하거나, 일부 공종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면허가 없는 경우 등
- 입찰업체 수가 2~3개에 불과한 턴키입찰의 경우 입찰 배제시 유찰 가능성이 높아 재입찰 등에 따른 사업지연 우려

☐ 개정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결격사유로 탈퇴시 당해 구성원을 대신할 신규 구성원 추가를 허용
 - 계약이행 중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결격사유로 탈퇴되더라도 구성원 추가를 허용하고 있음을 반영

□ 조치사항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심사) ①<생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에는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u>변경하여</u>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재심사)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 <u>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u> ----- -----, <u>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u> ----- ----- <u>해당 공동수급체를</u> ----- -----, -----, -----.

□ 현행 및 문제점

-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출자비율에 따라 공사분담금을 납부

- 일부 구성원이 공사분담금을 미납^{*}할 경우 정상적인 시공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타 구성원이 분담금 대납 불가피

* '11.5월 한국건설경영협회에서 실태조사한 결과 약 4,000억원 미납사례 파악,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분담금을 미납하는 구성원사가 증가하는 추세

- 공사분담금의 미납은 자기의 출자비율에 따른 시공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기성대가 미지급^{*} 내지 탈퇴 조치가 바람직하나 명시적인 규정 부재

- 발주기관은 타 구성원의 분담금 대납으로 시공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탈퇴조치 등 기피

* 공동이행방식은 출자비율대로 자기의 인력·장비와 자본을 투입하여 시공에 참여하는 것이며, 기성대가는 자기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있음

□ 개정 내용

- 구성원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미납분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해당 구성원에게 미지급

- 미지급 대가는 공동계좌에 입금하며 분담금 완납시 지급

-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발주기관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도록 명시

- 다만, 납부주기에 따라 구성원간 협의를 거쳐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현행	개정(안)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신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2(비용의 부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u>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부담한다.</u>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부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로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 -----

☐ 현행

- 공동계약에는 공동·분담이행 방식과 주계약자 관리방식*이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계약내용 등에 따라 선택하여 발주

* 종합공사 업체가 주계약자로서 공사를 종합적으로 관리·계획 및 조정하고, 종합 또는 전문공사 업체가 부계약자로서 시공에 참여

☐ 문제점

- 발주기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의 일환으로 주계약자 관리 방식으로 많이 발주하고자 하나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업체의 수가 부족한 경우 입찰의 경쟁성을 저해할 우려

* 종합공사에서 전문업체는 하수급업체로만 참여가 가능하나, 주계약자 방식에서는 원수급업체로 참여가 가능하여 원하수급체간 불공정거래 원천 차단

☐ 개정 내용

- 발주기관에서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업체의 수가 입찰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토록 의무화

☐ 조치사항

-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현행	개정 (안)
제2조의 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생략> <신설>	제2조의 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①<현행과 같음> ② <u>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u>

□ 현행

- 발주기관은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노무량·자재량을 계산하고 동 물량에 시중가격을 곱해 예정가격 산정

* 단위 공사물량에 투입되는 노무량·재료량 등을 산정한 자료로서 공공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활용

□ 문제점

- 발주기관에서 최신 표준품셈 대비 특정 노무·자재량이 적게 산정된 과거의 표준품셈을 자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예정가격을 낮추는 사례
 - 입찰업체의 공사비 관련 민원을 야기하고 공사비 산정에 대한 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 개정 내용

- 예정가격 산정시 최신의 표준품셈 사용을 의무화

□ 조치사항

- 「예정가격작성기준」 개정

현행	개정 (안)
제6조 <생략> <신설>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 현행

- 발주기관에서 물량내역수정입찰과 순수내역입찰*의 세부운영 기준을 정할 때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하고 있음

- 제도시행 초기('10.10월) 제도운영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조치

* (물량내역수정입찰)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사물량 내역서를 업체가 수정 가능
(순수내역입찰) 발주기관의 물량내역서 교부 없이 업체가 내역서 직접 작성

□ 문제점

- 제도시행 이후 대다수 발주기관의 경험이 축적되는 등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고
- 운영기준의 보완·개선에 대해서는 공사의 특성이나 내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

□ 개정 내용

-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규정 삭제

□ 조치사항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개정

현행	개정 (안)
제2조의2(적용방법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순수내역입찰을 하는 경우와 시행령 제14조제7항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수정입찰을 하는 경우, 순수내역입찰 및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적용기준,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선정기준, 물량 및 입찰금액적정성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대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적용방법 등) ①<삭제>

□ 현행 및 문제점

- '11.12월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12.4월 시행)하여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도 설계비를 보상*하도록 함에 따라 보상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 필요
- 현재 낙찰 탈락자에 대해 설계평가 점수에 따라 차별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찰취소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 부재

* 기존에는 입찰취소시 설계비를 보상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 그 손해를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견해에 따라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설계비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시행일 : 2012.4.1] 제89조제1항

□ 개정 내용

- 설계평가 후 입찰이 취소된 경우 현행 낙찰탈락자 보상기준을 준용하되 낙찰자가 없는 점을 감안, 설계비 보상대상 업체 수를 현행 대비 1개 추가
- 설계평가 전 입찰이 취소된 경우 모든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비 균분 지급
- 단, 1개 업체당 예산의 1/4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사에산의 2%를 설계비 보상에산으로 확보

□ 조치사항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행	개정 (안)
제85조(설계비 보상대상)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신설>	제85조(설계비 보상대상) -----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행령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제86조(설계비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에 규정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이하“설계비 보상예산”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6조(설계비 보상예산) ----- 제85조 각호에 규정한 자에게 ----- ----- -----
제87조(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5. <생략> <신설>	제87조(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에 대해 ----- ----- ----- 1.~5. <현행과 같음>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당해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인인 경우: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

현행	개정 (안)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인(낙찰탈락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낙찰탈락자)을 선정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0.3\% + (\text{설계점수}-60)/40 \times 0.6\%$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보상비 합계액(이하 “설계보상비 합계액”이라 한다)이 설계비 보상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각 낙찰탈락자의 설계보상비가 설계보상비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당해 설계비 보상예산을 나누어 지급한다. <신설> <신설>	2.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5인 이하인 경우: 제87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급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당해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당해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한다.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 ----- ----- -----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4인(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4인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모든 자)을 선정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보상비 합계액(이하 “설계보상비 합계액”이라 한다)이 설계비 보상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각 자의 설계보상비가 설계보상비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당해 설계비 보상예산을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다.